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2013년 민방위 교육 운영 지침



「2013년 민방위 교육운영지침」

- 본 민방위 교육지침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입니다.
- 자치구는 본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부합되게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사이트
 - www.safekorea.go.kr 국가재난정보센터
 - <http://safe.seoul.go.kr/emergency> 서울시 비상기획관
- 스마트폰용 앱 : 안드로이드폰용 마켓, 아이폰용 앱스토어에 접속 설치
 - 「국가재난안전센터」, 「서울안전지킴이」, 「튼튼안전 365」
- 민방위 교육업무 관련 기관
 -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 민방위과 ☎ 2100-5237
 -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2133-4536

목 차

□ 2012년과 달라진 민방위 교육	1
I . 교육개요	3
1. 목적 및 근거	4
2. 교육시간	5
3. 교육대상	6
4. 교육내용	6
(1)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7
(2) 민방위대 동원 교육 내용	9
II . 대상별 교육 실시 방법	11
1. 민방위 대원	12
(1) 편성 1~2년차	12
(2) 편성 3~4년차	13
(3) 편성 5년차 이상(비상소집)	15
2. 민방위 대장	18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19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20
5. 자체교육인정	21
6. 지원민방위대 과정	24
III .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25
1. 현지교육	26
2. 위탁교육	27
3. 야간·주말교육	28
4. 순회교육	28

5. 통신·서면교육	29
6. 생활 민방위교육	30

IV. 교육운영방법 31

1. 교육운영절차	32
2. 교육계획 및 결산	33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35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35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39
6. 교육면제 및 유예	43
(1) 교육면제	43
(2) 교육유예	46
7. 강사 활용	49
(1) 민방위교육 만족도 조사서	52
(2) 민방위훈련 만족도 조사서	54
(3) 사이버교육 만족도 조사서	55
8.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57
9. 과태료 부과	65
10. 보상 및 치료	82

[참고자료]

1. 민방위교육 우수 운영사례	110
------------------------	-----

2012년과 달라진 민방위 교육

구 분	2012 년	2013 년
연 차 별 교 육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1(1년차 민방위제도), 실전훈련 3 ◦ 3~4년차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교육 1, 실기 3 (화재, 교통안전, 전기가스) - 민방위의 날 훈련·자율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3(화생방, 응급처치, 재난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차 이상(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교육 	전년도와 동일
	* 총선(4.11)기간 14일, 대선(12.19)기간 23일 교육훈련 금지	* 재·보궐 선거지역은 선거기간 교육훈련 금지 (서대문구 등)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차 민방위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육 : 민방위 제도 및 시책 등 - 실전훈련 : 체험실습교육 ◦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 역할 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추가) - 민방위 표준교육교재(소방방재청)
강사위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강사 강의평가제 도입(80점이상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평가, 강의준비, 교수기법 등 - 안보강사 전원 - 실기강사 : 연구강의 동의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강사 강의평가제 도입(80점이상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전문성), 내용(합목적성), 성향(중립성), 강의안(강의계획서) 사전제출, 교수기법 등 연구강의 시행 - 강사전원 연구강의 - 관찰 및 설문결과 등 서류심사 병행 * 다민원 소지자 및 언론보도자 즉각 해촉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통지는 직접교부 또는 일반우편 * 보충 1,2,3차 통지는 등기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발송 확대 및 SMS 문자 통보 병행 	전년도와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교육시 연락처 및 전자문서 등 개인정보동의 등 필요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SMS 문자 통보를 위한 휴대전화 및 이메일주소 사전 징구
교 육 일 정 안 내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 교육일정 확인 안내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네이버·다음 검색창에 국가재난정보센터를 입력하여 교육 일정 확인 	전년도와 동일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소 : 서울 광진구, 인천 부평구, 경기 화성시,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확정 2개소(울산, 경기도) - 추후 재조사후 2개소 추가 가능

구 분	2012 년	2013 년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 민방위 방재교육원 (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민방위대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지원 : 323백만원 - 대상 및 교육기간 : 3,240명, 3일 	<p>전년도와 동일</p>
		<p>* 중앙 집합교육과 권역별 교육 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실전체험교관 양성과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교육기간 : 20명,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소양강사과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교육기간 : 40명,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기술지원대과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교육기간 : 20명, 2일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장기체류자 면제처리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교육훈련면제신청서 매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장기체류대원 직권 교육면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부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유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p>전년도와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교육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녀 출생증명서 사본 제출
<p style="text-align: center;">민방위대동원 응소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에 동원 응소시간 흡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동원 응소시간 준용 * 거리와 교통수단, 생업 등을 고려하여 응소시간 차등화(6시간, 24시간, 48시간)

I. 교육 개요

1. 목적 및 근거
2. 교육시간
3. 교육대상
4. 교육내용

I. 교육 개요

1. 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 강화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 육성

나. 법적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제24조, 제28조 ~ 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 ~ 제33조, 제38조 ~ 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제40조, 제55조 ~ 60조, 제66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2. 교육시간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1~2년차	4시간	집합교육	안보교육(1년차소양)+ 실전훈련(3시간)
3~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훈련·자율 참여	안보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소집교육, 사이버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임무 고지·교육(1시간)

○ 교육시기

- 상반기 : 3. 4 ~ 6. 28 (기본교육)
- 하반기 : 9. 2 ~ 11. 29 (보충교육)
- * 1~2월은 교육계획 수립, 7월, 12월은 상·하반기 교육 결산
- * 2013년 교육결산 및 2014년 교육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11월말까지 교육실시 종료

○ 교육주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에 전국 동일하게 교육실시
- 1~4년차 민방위대원은 실제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교육장 및 민방위훈련 장소에서 민방위 훈련 후 교육 실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선거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당일까지)

3.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 일반대원(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지역·직장)

4. 교육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 제도 및 국가 주요시책,
- 안보교육 : 최근 한반도의 정세와 국가안보의 중요성
- 실전훈련 : 화생방, 응급처치, 재난대비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교육
 -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화, 응급복구
 - 지역별 대피시설, 급수시설, 민방공경보 식별요령 교육
 -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

민방위 임무	편제(통리대)	훈련장	교육내용
상황전파 (경보·통신)	상황전파대	경보통신 훈련장	- 경보종류 및 국민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대피통제대	대피통제 훈련장	- 주민대피(대피시설 숙지 등), 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화생방대	화생방 훈련장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인명구조 및 구호	인명구조대	인명구조 훈련장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소 화	소화대	소수방 훈련장	- 화재 초기 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중요시설 복구	지원대	응급복구 훈련장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1)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구 분	교육 내용
1. 민방위 편성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원의 소속(분대) 및 민방위대장 확인 ○ 편성(만20~만40세) 및 법정 당연제외자 (군인, 학생, 예비군 등)
2. 민방위 교육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교육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및 자체교육인정자 등 내용 - 교육유예 및 교육면제 사유와 본인 및 세대주의 신고절차 등 - 자율참여 안내(민방공 훈련 유도요원, 폭설·폭우 등 재해복구 참여 등) - 현지교육 안내(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 교육훈련통지서 안내 및 3회 무단 교육불참자 처리 규정(과태료 부과)
3. 민방위대원의 평상시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방화 등 거동이 수상한 자 신고체제 유지(신고망 관리) ○ 관내 경보·비상대피·급수시설 현황 및 활용·관리 방법 ○ 민방위 물자·장비 비축현황 및 활용·관리방법 ○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5. 민방위사태시 동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4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 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 동원을 위해 국가 동원령 발령 시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6. 동원 시 집결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 시 집결장소
7. 동원시 개인별 임무 및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시 개인별 임무와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대피소 안내 및 질서유지, 주민·차량통제, 민방위시설(대피, 급수)과 장비 점검·관리, 위험물 예찰,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보급품, 군수물자 수송) 등
8. 동원시 개인별 지급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시 개인별 지급장비
구 분	교육 내용

9. 동원유예사유 및 불응자 처벌 규정	○ 법정 동원유예 사유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불응 시 처벌 규정
10. 화생방 사태별 행동요령	○ 화생방 사태별 행동요령(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11. 방독면 착용 시기	○. 방독면 착용 시기
12. 방독면 착용 요령	○. 방독면 착용 요령
13. 재난유형 이해 및 행동요령	○ 재난의 유형 이해(인적재난, 자연재난 등) 및 행동 요령
14. 재난상황 신고 및 보고요령	○ 재난 상황 발생시 해당기관 신고 및 보고 요령
15. 긴급복구 및 수습대처 요령	○ 전문가 현장도착전 사전 긴급복구 및 수습 대처 요령
16. 재난유형별 인명구조 및 구급요령	○ 재난유형별 인명구조 및 구급요령 - 인적재난(산불, 화재, 교통사고, 기름유출 등) - 자연재난(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
17. 응급환자 대처요령	○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주변통제, 119신고) ○ 사상자 응급처치 요령(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 응급환자별 구조 및 수송 요령(목·척추환자 등), 부목·붕대사용법
18. 상황별화재 대처요령 및 소화기사용법	○ 상황별 화재 대처 요령(기름·가스·일반화재 등) 및 소화기 사용법 - 화재 시 비상소화장치 및 소화전 등 활용 초기 화재진압 교육 (소방서 협조 등)
19. 가옥화재 대피방법 및 요령	○ 가옥(아파트) 화재시 가족·주민 대피방법 및 요령
20. 전시민방위 행동요령	○ 안전대피소 위치(주민들 안내) 질서유지,장비체험

[2] 민방위대 동원 교육 내용

○ 법 제26조 동원요건(일반요건)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민방위사태(법제2조)

-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 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동원요건(세부요건)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 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 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동원발령권자(법 제26조)

- 국 가 : 소방방재청장
- 지자체 : 시·도(시·도지사), 시·군·구(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읍·면·동장)

○ 동원령 전달체계

- 발령권자 → 읍·면·동장 → 민방위대장 → 민방위대원

○ 동원요건 판단 보고체계(시행규칙 제43조)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읍·면·동장 ← 민방위대장
- * 보고 → 민방위협의회의 심의(시간적여유가 없거나 긴급시 생략) → 동원 여부 결정

○ 동원령 전파방법

- (공고) 방송, 일간신문,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정보통신망 등에 동원시기, 지역, 대상, 사유, 동원 중 행동요령 등을 공고
- (전파) 사이렌·타종·경적·신호기
- (전달) 비상연락망(구두), 확성기(방송 및 공고)
- (통지) 동원명령통지서(개별), 정보통신망 이용

○ 동원응소시간(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2조)

- 민방위기본법의 동원 응소시간 함결로 유사법의 동원 응소시간을 준용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시·군·구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 동원 발령시 이동거리와 교통수단, 생업 등을 고려하여 응소시간 차등화

○ 동원결과 보고체계(시행규칙 제42조)

- 소방방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읍·면·동장 ← (민방위대장)

○ 동원령 해제(법 제26조⑤, 시행규칙 제44조)

- 동원명령자는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해제

○ 동원불응자 처벌(벌칙 및 과태료)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법 제36조)

- (국가적재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불이행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

○ 보상 및 치료(법 제29, 시행령 제42조)

-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자와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치료

○ 재해 등 보상(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제39조)

-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은 휴업보상금 지급

-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실비변상 등(법 제30조, 시행령 제45조)

-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급식과 실비(식비·숙박료·교통비) 지급

- 중장비 등의 기계 기구를 동원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Ⅱ. 대상별 교육 실시방법

1. 민방위 대원
2. 민방위 대장
3. 민방위 기술지원대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5. 자체교육인정
6. 지원민방위대 과정

II.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1. 민방위 대원

(1) 편성(1~2년차) : 집합교육

- 대 상 : 편성 1년차 민방위대원
- 주 관 : 구청장
- 종 류 : 기본, 보충1차·보충2차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교육 실시 (1,2,7,8,12월 제외)
- 시 간 : 1일 4시간(안보교육 1시간(1년차소양포함), 실전훈련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구 분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방 법
안보교육 (소양)	○ 최근 북한정세와 통일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민방위제도 등	1시간	강의 및 동영상
실전훈련	○ 화생방, 응급처치, 재난대비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3시간	강의, 실습
	설문조사		

- 편성 1년차 민방위 대원의 경우에는 안보교육시 민방위 제도에 대한 소개 포함 1시간
- 실전훈련은 화생방, 응급처치, 재난 등의 과목과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대 등) 편성제대별로 교육 또는 대피시설, 급수시설, 비상사태발생시 행동요령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

(2) 편성(3~4년차) : 집합교육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 · 자율 참여

① 집합교육

- 주 관 : 구청장
- 종 류 : 기본, 보충1차, 보충2차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구 분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방 법
안보교육	◦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 화재방, 응급처치, 재난대비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3시간	강의 + 실습
	설문조사		

②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 주 관 : 구청장 (동장)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
- 시 간 : 1일 4시간 이내
- 교육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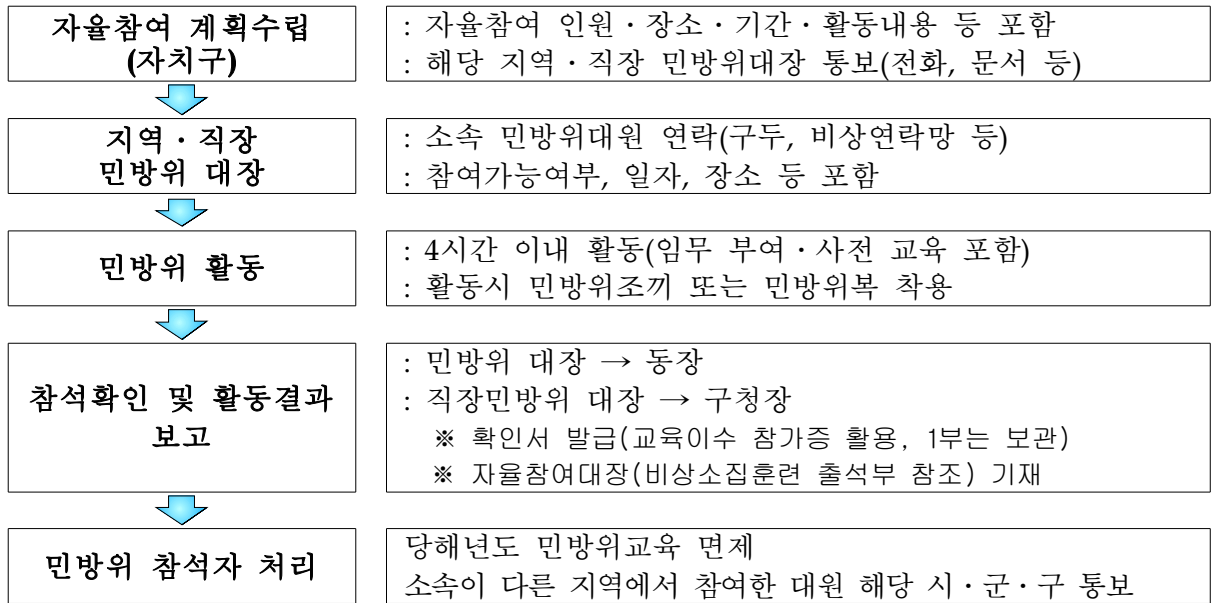
교 육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방 법
편성제대별 임무 오리엔테이션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1시간	실기(훈련참여)
안보교육, 훈련 평가 등	1시간~2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등
설문조사		

* 훈련일정 등 세부사항은 '13년 민방위훈련 지침 참조

③ 민방위 자율참여

- 주 관 : 구청장(동장)
- 시 간 : 1일 4시간 이내
-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절차 및 활동분야

< 운영절차 >



< 활동분야 >

구 분		기 간	주 요 임 무
안 전 활 동	물놀이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여부 확인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지역축제	연중	- 관람객 안전지도 및 계도 - 축제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 축제장내 위험시설물 확인·점검
	재난취약 지역점검	연중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예찰활동 - 노후시설(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주택 등) 안전점검 등
사 태 예 방 및 수 습	대 설	12-2월	- 대설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산 불	11-3월	- 산불진화활동, 주민통제, 확산방지
	풍수해 등	5-10월	- 취약지 사전예찰(절개지, 급경사지 등) -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한해	6-8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사전예찰, 수원개발, 하천물막이작업

※ 기타 자치구 사정에 따라 민방위대 임무에 적합한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 가능

(3) 편성(5년차 이상) : 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훈련·자율참여

① 소집훈련

- 대 상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주 관 : 구청장(동장)
 - 불참자 보충교육훈련(2회)은 구청장이 실시
- 종 류 : 기본, 보충1차, 보충2차
- 시 기 : 상반기 기본훈련, 하반기 보충훈련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지역·직장대별 실정에 맞게 비상소집훈련 실시(1,2,7,12월 제외)
- 시 간 : 연 1회, 1시간
 - 발령시간 : 야간, 주말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사전 공지)
 - 교육인정 : 교육시작 1시간 전 출석자에 한해 교육인정
- 훈련방법 : **예고훈련**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통지서상 시간은 응소 후 집합교육 시간을 말함, 필요시 발령시간을 별도 기재
 -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및 마을회관 등 **적정 장소 선정**,
비상소집훈련시 민방위복(간소복)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 훈련 응소 가능
- 내 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20가지), 민방위 시설 확인 등
 - 동장은 실효성 있는 소집훈련을 위하여 적정인원 소집, 반드시 **응소시간 종료 후 1시간 집합교육 실시**
 - 민방위대원의 편성제대별 임무·역할 등 교육은 동장 또는 민방위대장 등 선정·실시 가능

교육 과 목	교육 시간	교육 방법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시간	이론 + 실습 등

- 운영절차 : 훈련계획수립 → 훈련예고(통지서 발송) → 기본비상소집훈련→ 불참자 보충훈련(1, 2회) → 불참자 정리 → 실시결과 보고 (교육결산시)
- 유의사항
 - 교육시간 1시간 준수 (교육 미실시로 민원발생시 담당자 문책)
 -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 대리인 응소 차단
 - 자치구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최종 불참 시 과태료부과 등 불참자 정리 철저
 - 조기 응소자 대책 등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자치구 사정에 따라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집합교육(4시간) 중 '기본교육(1시간)' 참여시 출석 인정 가능

② 사이버교육

- 대 상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주 관 : 구청장
- 운영방법 : 소방방재청에서 콘텐츠 제공, 자치구에서 시스템 구축
- 운영절차 : 계획수립(구) → 콘텐츠 승인요청(자치구→소방방재청) → 승인통보(소방방재청→자치구) → 시스템구축(자치구) → 교육실시
- * 콘텐츠 승인요청시 교육기간, 대상, 운영방법 등 기재
- 이수조건 : 진도 100%이고 평가 70점 이상 (평가문제 10문제)
 - 4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1시간 또는 4개 과목을 압축한 1개 과목을 1시간 교육

○ 교육과목

과 목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편성 제대별 임무 및 동원절차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휘분대, 상황전파분대, 대피통제분대, 인명구조분대, 소화분대, 화생방 분대, 지원분대별 임무 설명 동원의 법적근거, 목적, 대상 등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인명구조 및 소화 행동요령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응급 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화재초기진화, 소화기 등 장비사용요령 등 	
재난대비 행동요령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 쓰나미, 풍수해, 태풍, 테러 대비 행동요령 	
화생방(CBRNE) 발생시 행동요령	1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BRNE 발견 및 인지방법, 현장대피, 위험상황 전파 및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 	

2. 민방위 대장

- 대 상 : 통대장 및 직장 민방위대장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입교자 제외)
 - 대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고령, 권위, 해외출장, 질병 등 그 정도의 중요함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부대장 참석
 - 신규 민방위대장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연구원 교육 참여
 - * 민방위 대장 및 강사, 기술지원대 중앙 교육 시 교육비 지원
- 주 관 : 구청장
- 시 기 : **3월중**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집합교육(기본교육 1시간 + 실전훈련 3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보교육	· 최근 북한정세와 우리 안보, 안보개념, 자주국방(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시간	강의
실전훈련	◦ 화생방, 응급처치, 재난대비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 지역별 특성화 교육(산불, 수해 등)	3시간	강의 및 실습
	설문조사		

- 민방위대의 임무·역할 등 민방위 제도, 안보 교육
-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 교육
-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실습
 - * 통 대장 교육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

3.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 대 상 : 자치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 주 관 : 서울시장(구청장)
- 시 기 : 3월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인근 자치구) ~ 4월
 - ※ 4개 권역별 세부추진 계획 별도 시달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실전훈련시 지휘통제, 상황전파, 비상대피유도, 인명구조, 화재방대 등 기술지원대 임무 숙지 교육 실시)
 - 기술지원대 편성제대별 전문교육 또는 위탁교육 계획 수립
 - * 기능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지역 군부대, 원전·유독가스 방재전문교육기관 등과 사전 협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활용
 - 자치구 주관으로 교육비 지급
 - * 기존 통 대장 교육비에 준하여 지급
 - * 자치구는 통지서 발송, 교육비 지급, 필요시 차량제공 등 지원

4.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 대 상

- 교육대상 30명 이상인 직장대
- 전년도 검열성적이 70점 이상인 직장대
- 민방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

○ 위임권자 : 구청장

○ 위임시기 : 연초 교육시작 전

○ 위임범위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 운영절차

-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 : 민방위대장 → 구청장
- 교육소집은 공문서 회람, 게시·공고 등을 활용하여 통지
- 교과목 및 교육방법 등은 일반대원 교육 준용

○ 지도·감독

- 구청장은 교육운영 전반 지도·감독 철저
 - 교육 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 교육운영 부실 직장대 : 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 * 상급 감독관청이 있는 직장대는 상급기관에 통보 병행
 - 교육실시 상황 확인 지도
 - 확인관 임명 : 구청장이 직장별로 임명
 - 확인관의 임무
 - 교육계획 사전심사 및 보완
 - 교육시간 및 강사운영, 출석관리 등을 책임지도
 - 연명부, 교육 운영일지 등 일일결산내용을 확인 서명
- ※ 직장민방위대 담당자 워크숍 추진 (세부계획 별도 시달)

5. 자체교육인정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 대 상

근 거	대 상 자	비 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과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112조	
제1항 제11호 (17종)	○ 각종 갯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 (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항공초단과 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마. 특수경호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후
- 제출처 : 구청장 또는 동장

- 자체교육 실시

- 직장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 직장인이 아닌 경우 : 해당 구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집합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 제출시기 : 연 1회 (교육종료 즉시)
- 제출처 : 교육실시자 → 해당 구청장 또는 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지도·감독

- 구청장 및 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관리)
- 자체교육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비상소집훈련 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 전체 대원에 적용(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 이수)
- 자율방범대원은 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에 참여한 자와 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동에 자율방범대원 등록대장 비치)

6. 지원민방위대 과정

○ 목 적 : 지원민방위대과정 교육은 국가비상사태나 대규모재난 시 주민대피, 현장 수습·복구 등 각종 지원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예민방위대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천 교육 과정

○ 주 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시 기 : 3월~11월(9개월), 2박3일(비합숙)

- 교육기간, 교육 횟수 및 교육인원은 교육시설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

○ 교육대상 : 지원민방위, 여성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전문가(지원자)

※ '13년 민방위대 편성지침 : 지원민방위대는 기술지원대 단위대에 편성됨에 따라 기술지원대교육 미이수자도 교육대상에 포함

○ 교육운영 : 중앙교육 + 시·도 권역별 현지교육

- 중앙교육(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2,040명 교육(대장 180명, 대원 1,860)

- 권역별 현지교육(소방방재청, 시·도 공동주관) : 1,200명 교육

※ 시·도 지원신청을 받아 상반기·하반기 6~8회 정도 운영

· 자치단체의 교육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중앙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
· 현장방문 교육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보와 재난현장 등을 선정하여 운영

○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 민방위제도 및 주요 시책
- 편대 운용 및 지휘 요령
 - 사고지휘체계 및 리더의 역할 이해
 - 민방위사태 이해, 동원시 임무 및 활동 등
 - 초기대응, 응급대응, 사후대응
- 민방위사태 실전대비 체험 및 지휘 실습 현장 교육
 - Role-playing 방식 교육
 - * 문제제기 ⇨ 임무부여 ⇨ 문제해결 ⇨ 보완·개선
- 체험 및 지휘실습 토론 및 발표
 - 체험 및 지휘실습 운용 문제점 등 토론
 - 국가안보와 재난상황에서의 지원민방위의 역할과 활동 중요성 토론
 - 지원민방위 발전방안 제시 등
- 한반도 안보정세 이해
 - 안보 및 재난현장 교육

Ⅲ. 민방위 교육 다양화

1. 현지교육
2. 위탁교육
3. 야간·주말교육
4. 순회교육
5. 통신·서면교육
6. 생활민방위교육

Ⅲ. 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1. 현지교육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운영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운영방법
 - 교육 종료시 본인 확인 후 교육참가 증 발급
 - 현지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완료자는 공문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 **교육처리결과 즉시 입력** :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장기간 미처리시 민원발생
- 현지교육일정 안내시 민방위 사이트(www.safekorea.go.kr)의 교육일정 조회 안내

2. 위탁교육

- 대 상 : 민방위대원, 대장
- 시 간 : 1회 4시간
- 운영절차 : 전문(위탁)기관 협의 → 계획수립 → 위탁계약 체결 → 교육홍보 및 대상자 통지 → 교육실시 → 교육결산
- 교육반 편성 : 위탁기관과 협의, 적정인원 편성
- 교육내용 : 전시 대비 및 재난발생시 예방과 대처요령 등
 - * 기존 재난안전관련 시설에서 **안보관련 교육 및 시설** 추가
- 교육방법 : 시설운영기관과 연중 일정 협의 및 위탁
 -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당해연도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교육을 개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위탁교육기관

교육기관	지역	교육내용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충남 천안시 유량동	민방위, 방재, 안전, 화생방, 구조구급 등
산업안전관리공단	인천, 전남, 경북, 충남, 경남	업종별 재해요인 분석, 안전대책 제시 및 안전작업요령, 위험요인의 평가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 유성구	방사능 대처요령, 방사선 방재시스템
지하철 공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 전동문 수동개폐, 비상탈출, 소화기 사용 등
전기·가스안전공사		전기·가스 사용법, 감전사고 예방법, 가스 누출시 응급요령 등
한국소방검정공사	경기 용인시	소방장비 사용법, 화재예방 등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119 안전체험관, 소방 안전체험관)	16개 시도, 중앙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 지진, 완강기, 열·연기체험, 소방시설 실습 등
군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 훈련 가능 군부대	화생방 및 연기체험, 가스화재 예방, 생화학테러 방지 등
대학교	전문기능 대학	인명구조, 응급처치, 자동차응급처치, 급수·난방설비, 소방설비 및 전기안전 등
한국방재협회	서울 서초구	호우태풍 및 지진 예방 및 대처법 등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자원봉사자 역할, 안전문화운동 참여 등
통일교육원 (관문점, 땅굴, 전쟁기념관 등 안보관련 시설)	서울 강북구	안보의 중요성, 전시대비 행동요령 등

○ 위탁교육시 검토사항

- 교육인원과 대상은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위탁교육기관과 교육내용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 위탁교육기관 위치 등 교통여건을 고려하였는지
- 기타 위탁교육기관의 요구사항은 재확인 되었는지 여부
- 참여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3. 야간·주말교육

- 대 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 주 관 : 구청장
- 시 기 : 자치구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운영절차 : 야간 및 주말 교육(비상소집훈련)계획 수립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민방위 사이트(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를 통한 야간·주말교육 자동연계 홍보 → 교육 실시 → 교육참석자 입력
- 교육방법 : 지역특성에 맞는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

4. 순회교육

- 대 상
 - 대원의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
 - 교육대상이 최소 교육반 편성인원 이상인 지역
- 주 관 : 구청장
- 운영절차 : 교육대상·지역선정 → 순회교육 계획 수립(교과목, 순회일정 등) → 교육단 편성 → 현장 출장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자치구에서 강사, 교육용 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운영
 - 일반대원 교육과목, 교육시간 준용
 - 이동민원실·순회진료·건강진단 등 병행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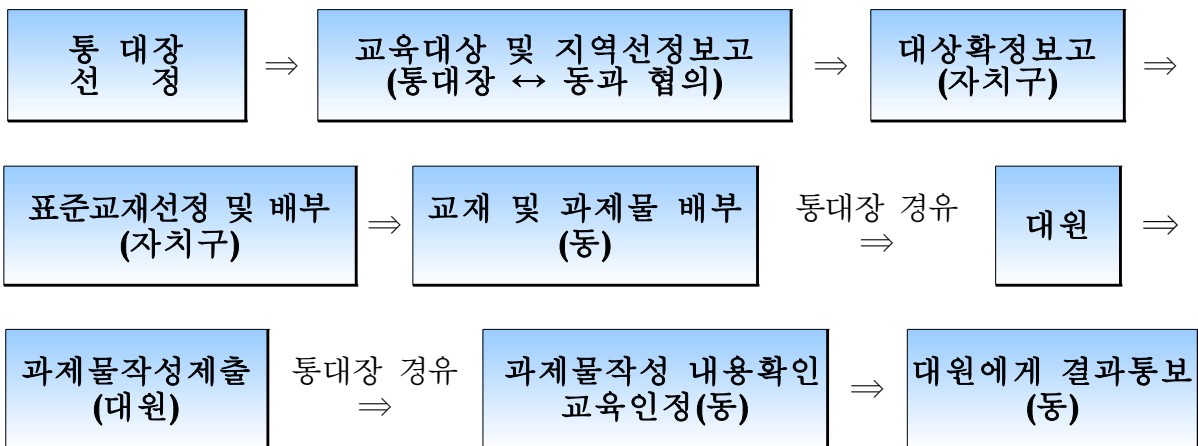
5. 통신·서면교육

○ 대 상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자체교육 인정자 중 지역민방위 대원
- 도서·낙도, 산간·오지지역 거주 민방위 대원

○ 주 관 : 동장

- ### ○ 운영절차 : 교육대상·지역선정 → 표준교재 선정·배부 → 과제물 제출·교육인정



○ 교육방법

- 교육교재 및 과제물 배부는 4월말 이전에 배부
-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대상대원이 교재를 숙지한 후 내용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중 선택하여 교재 수령 30일 이내 작성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인정
- 통신교육 과제물 미제출 등 교육불이행자는 보충교육 소집통지서 발부 등 일반대원 교육절차에 준하여 운영

* 사이버교육 가능 (지자체 자율적 추진)

6. 생활민방위교육

- 대 상 :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일반 국민
- 주 관 : 구청장
- 시 기 : 구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적정 시기 선정)
- 장 소 : 다중집합장소 등 자율선정
 - 학교, 직장 회의실,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 민방위교육장 등
- 교육내용
 - 전시국민행동요령, 경보종류별 행동요령 등 안보·안전교육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재, 풍수해, 물놀이, 등반, 교통안전,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 등 생활 속의 위험 대처요령 등
 - 마을별 재난취약요인 및 각종 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비상연락 체계정비 등
- 교육방법
 - 전문 강사, 실기강사를 활용한 실습교육
 - 생활민방위지도자과정 등을 이수한 지역대장·마을지도자 활용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동영상, 만화, 팸플릿 등 민방위 교육교재 활용
 - 직장, 사회단체, 다중집합장소 등에 적극 제공 또는 대여

*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 시 학교 지도교사는 민방위교육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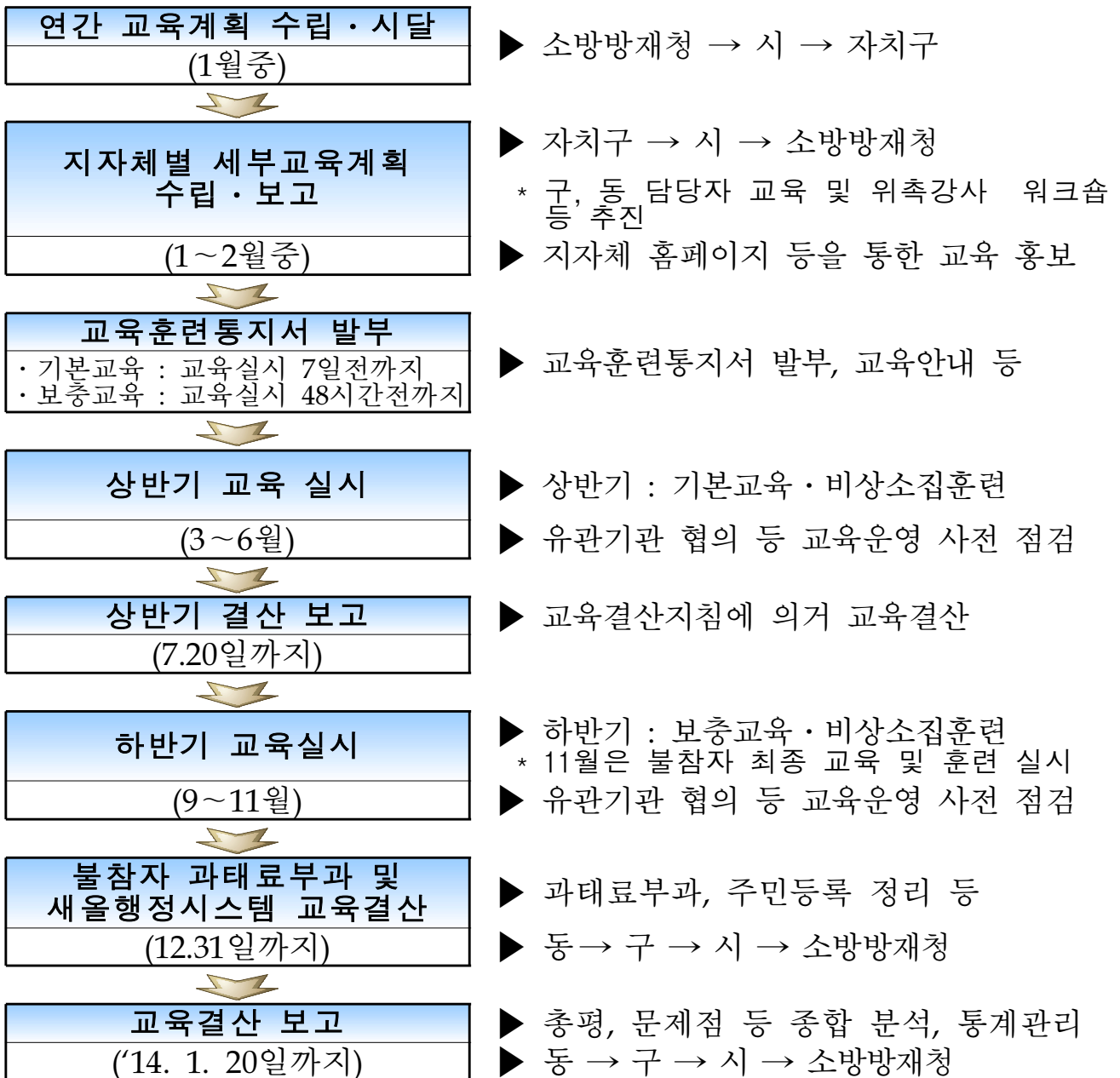
IV. 교육운영방법

- 1. 교육운영절차**
- 2. 교육계획 및 결산**
-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 6. 교육면제 및 유예**
- 7. 강사 활용**
- 8.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 9. 과태료 부과**
- 10. 보상 및 치료**

IV. 교육운영방법

1. 교육운영절차

○ 소방방재청장 2013년 교육지침 시달 → 시 → 자치구 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실시 → 교육참석·불참자 정리 → 교육실시 결과 새울행정시스템 입력·보고



2. 교육계획 및 결산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제40조

나. 교육계획 수립

- 계획수립자 : 소방방재청 → 시 → 자치구 → 직장 민방위대장
- 일정 : 1월중
- 교육계획 내용 : 소방방재청 교육지침에 맞게 세부교육계획 수립
 -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교육훈련 점검반 편성
 - 강사운영, 교육시설 확충 개선계획 등
- 교육계획보고 : 2월중
 - 직장민방위대장 → 자치구 → 시 → 소방방재청

다. 담당공무원 등 교육실시

- 대상 : 자치구, 동 담당자, 위촉강사
- 주관 : 자치구
- 일정 : 2월중
- 교육내용 :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이해

* 신규 민방위 업무담당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공무원 교육과정 의무적 이수

라. 교육결산

○ 주요 내용

-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 교육실시 결과 통계자료 (서울행정시스템 활용)
- * 총괄, 교육참석, 교육면제, 교육과목, 교육반 편성 등

○ 보고 주기

- 일일결산 : 매일 변동자원 및 교육참석자 입력 후 내부결재
- 월중교육 추진실적 보고: 다음달 3일한(동 → 구)
- 분기별 교육추진실적 보고 : 분기 다음달 5일한(구 → 시)
- 결산보고 : 상반기 7.20한, 하반기 익년 1.20한 (시→ 소방방재청)
- * 월보·분기보고는 서울행정시스템 입력으로 같음, 상반기 및 결산보고는 별도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서울시스템 및 수기 보고 병행

○ 유의사항

- 자동집계 부분과 수기입력 부분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 유의
- * 불참자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의 합계 일치 여부 확인
-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 입력방법 등 관련 문의 → 서울행정시스템

서울행정시스템 입력 문의 (02-2076-5800)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가. 교육안내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 필수포함 내용 : 교육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및 동의서 징구, 현지교육, 교육일정 조회 사이트 안내
- 체류지(현지)교육 안내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토록 안내(편성연차별 교육시간·장소 확인, 신분증 지참 참석)
 - 시도 및 시군구는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웹사이트의 교육일정을 자체 홈페이지에 링크
 - * 현지교육(시행규칙 제33조)은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확대 시 특정 지역의 교육수요 폭증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가급적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안내
- 매월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 타시군구와 비교되는 수범사례는 신문 게재 등 홍보, 수시 공문 보고(교육기간내 우수사례 전파,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시 우선 추천)
- 민방위 교육·훈련시 민방위 복제 착용 (민방위복, 활동복, 모자 등)
 - 국고보조사업 활용 및 자체예산 확보, 연차적 구입 확대

나. 교육일정 입력

-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새올행정시스템에 교육일정계획 입력시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웹사이트의 교육일정 화면에 실시간으로 연계

확인 방법	○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 (http://www.safekorea.go.kr)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종로구청 국가재난정보센터 교육일정 링크 화면)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통지서 전달

○ 전달책임자

- 통 민방위대 : 동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 민방위대 간부요원, 기술·기능요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 교부횟수 및 시기

- 기본교육훈련 : 1회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 보충교육훈련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달방법

- **(원칙)** :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 본인이 아닌 자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미전달시 과태료 부과 확행)

- **(허용)**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등기우편 전달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령증 등 **증빙서류 3매 확보**(등기우편 발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문서 등 포함), 미확보시 **공시송달 확행**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추진

- 직접전달이 어려운 지역은 일반우편, 연초에 안내문 통보
 - ※ 특히, 보안이 강화된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일반우편 전달 적극 활용
- 편성사실 통지시나 대원 소집시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변동사항 발생시까지 지속 사용)
 - 이메일, SMS 발송시 수신확인(날짜, 시간)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같음(관련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
 - * 지자체별 기구축된 민원, 시정홍보용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 구축 추진
 - 이메일 통보시 SMS 통보 병행, 필요시 3일전, 1일전 등 반복 통보

통지서 전달방법	기본	보충1차, 2차	추가교육(필요시)
법령상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좌 동	좌 동
권 장	일반우편 전자문서	등기우편(직접 교부), 전자문서, 공시송달	등기우편(직접 교부), 전자문서, 공시송달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교육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소집기간 (우천시)	~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번호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년 월 일		년 월 일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년 월 일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니다.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면·동사무소(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위치도, 교통편 * 현지교육 안내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명시
--	--	--

※ 민방위 교육훈련 시 인정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나. 교육실시

- 대상별 교육종류 및 방법

대상별	교육종류	편성연차	주관	교육시간	비고
일반 대원	집합교육	1~2년차	구청장	4시간 (안보(소양)1+실전훈련3)	
	집합교육	3~4년차	구청장	4시간 (안보교육1+실전훈련3)	
	민방위 훈련참여	3~4년차	구청장, 동장	4시간 이내 (사전교육1+실전훈련1 +안보교육·평가2)	불참자 및 미지정자 집합교육
	민방위 자율참여	2년차 이상	구청장, 동장	4시간 이내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동장, 직장민방위대장	1시간	
	사이버교육	“	구청장	1시간	불참자 비상소집
민방위 대장	집합교육		구청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기술 지원대	집합교육		시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시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 민방위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확행
- 통민방위대 교육 : 구(동) 담당자 및 통대장 확인서명
- 기술지원대 교육 : 시(구)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 직장민방위대 교육 : 구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 부득이한 경우 민방위 대장 대신 부대장 확인서명
- 실전체험훈련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치(안전모, 안전줄, 지상

충격흡수장치) 비치

- 실습장치 및 안전장치의 올바른 사용법과 매뉴얼 비치하여 실습교관과 교육생들에게 준수 의무 교육 실시
 - 집합교육시 동 민방위 담당이 참석하여 소관지역 민방위대원의 출석 확인
 - 입교자 명부(좌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육태도, 비고) 작성
 - 교육 시작전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참가증에 좌석번호 기입
 - 입교자 명부 기재 사항을 기입하고 교육참가증을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
 - 민방위대원 교육 중 교육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교육을 불인정하거나 퇴장 조치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 ②항)

다. 교육참석자 입력

-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출석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상 내부 확인·결재 확행
 - 통민방위대 : 동장 또는 구청장
 -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구청장
 - * 민방위 대원명부는 시스템상 관리, 수기로 중복 작성 지양, 매년 12.31이전에 최종분을 출력하여 보관
 -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완료자는 공문 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새올행정시스템과 바코드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참석결과 신속 입력
 - 지자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 운영
 -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교육 참석 여부 입력이 되지 않음으로 기존의 처리방식대로 입력 처리

6. 교육면제 및 유예

(1) 교육면제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나.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 현재까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사례는 없음
-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다.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 해외장기체류대원 : 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으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읍·면·동에 사전 제출한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정부법 78조(과태료)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추가('10.11.18. 시행)

- 다만, 민방위 교육훈련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되어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함

< 관련법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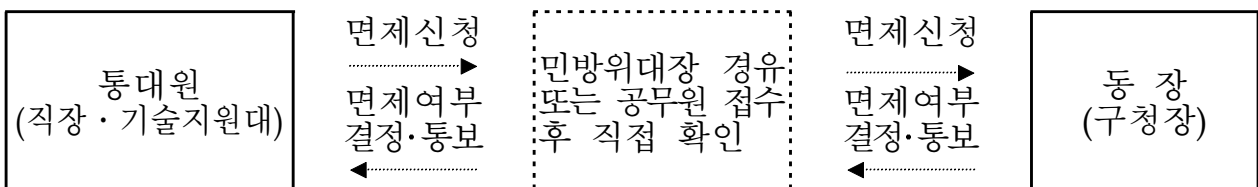
○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생략)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 법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 면제절차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우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 처리)

마.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
 - * (예시) 해외파견근무 명령 변경으로 계획보다 조기 귀국하여 교육훈련계획 중에 있더라도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
-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편성연차가 상향 조정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 원칙**, 자치구 교육일정 종료 후 확인하여 소급 적용 불가, 보충교육이 남은 경우는 신청(확인) 후 면제처리 가능
 - * 다만, 당초에는 1년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신청자가 당해연도 교육계획 종료시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하되, 교육유예 등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면제 처리 불가
- 지정된 교육운영기간 동안 **3월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
- **교육당일 여행중**이어야 함(3월 미만인 경우는 교육유예처리)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 면제대상 : 2년차 이상부터 가능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 *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면제내용 :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면제
- 면제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구청장 또는 동장 내부결재(교육면제 승인) → 서울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 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2) 교육유예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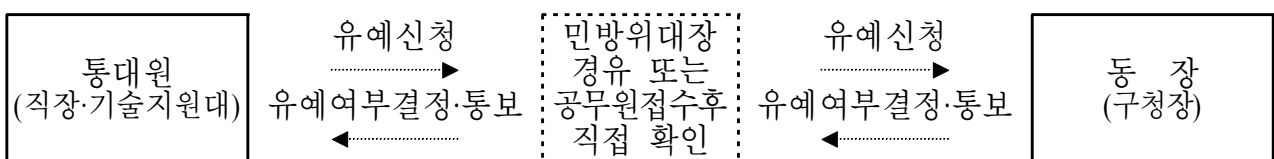
나.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다.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청장(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을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동장(기술지원대원은 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라. 유예절차



-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 통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 제 신청서
 유 예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번 지	통 반
	소 속		(전화 :)	
훈 련(동 원) 면 제 유 예 기 간		훈 련(동 원) 장 소		
면 제 · 유 예 사 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	<input type="checkbox"/>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 음
	<input type="checkbox"/>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 · 이장의 확인서	없 음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 음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 음
면 제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input type="checkbox"/>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input type="checkbox"/>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출하는 곳	읍·면·동 또는 시·군·구	처리기간	즉 시
수 수 료	없 음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u> · <u>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u> <p>○신청서의 처리절차</p> <p>· 유예</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p>교육훈련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면·동(통·리 대원) →시·군·구(직장·기술지원대원)</p> <p>동 원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 읍·면·동</p> </div> <p>· 면제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면·동(통·리 대원) →시·군·구(직장·기술지원대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p>↓</p> <p>통 보</p> <p>↓</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 <p>검 토</p> <p>↓</p> <p>결 정</p> </div> </div>			

7. 강사 활용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나. 운영개요

- 위촉권자 : 안보강사 (서울시장), 실전훈련강사 (구청장)
 - ※ 안보와 실기강사는 겸할 수 없음
- 위촉대상 : 안보강사, 실전훈련강사 (화생방, 응급처치, 재난)
 - 강사운영 및 관리 : 자치구청장
 - ※ 당선자, 낙선자, 입후보예정자, 정당인 등 개인 홍보에 치중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제외
- 위촉인원 : 자치구별
 - 안보강사 (4명 이내)
 - 실전훈련강사 (과목별 4명 이내)
- 강사위촉 자격기준
 - 양질의 강사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강사 자격 등 기준 마련·적용
 - 강사평가위원회 구성, 서류심사(전문자격 여부) 및 면접 실시(국가관, 강의능력, 정치·종교 편향), 강의안(강의계획서) 사전제출 등 시주관 연구강의시 평가 점수 80점 이상 획득한 자
 - 민방위분야 유경험자(2년 이상)에 대해서는 그 경력에 따라 가점부여
 - * 안보관련 강사 : 경력(3년 이상), 석사이상 학력소지, 사전에 강의교안 평가 후 위촉하여 양질의 교육 실시 및 민원발생 차단

과 목	주요 경력 및 전공	비 고
안 보	안보 관련학과 전공자 및 관련분야 근무자	
화생방	군 화생방병과 및 관련분야 전공자	
응급처치	응급처치 전문강사(자격취득) 및 관련분야 전공자	대한적십자사 등
재난대비	방재(기상청) 교육원 및 관련분야 전공자	지진, 풍수해
- 과목별 2년 이상 경력자		

- 위촉기간 : 1년

○ 강사 위촉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등

○ 강사별 제출 서류

①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등 동의서 ④ 강의계획서

- 교육 관찰 및 설문결과 우수 강사자는 서류 심사로 위촉 가능

다. 강사관리

○ 강사 위·해촉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우수강사 확보(대중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유관기관 공문 등 적극 홍보)

- 위촉장(별지 제20호 서식) 수여시 간담회 등을 병행, 강사 임무와 중요성 당부

* 민방위 강사가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강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나 다민원소지자 및 언론보도자 즉각 해촉

- 집합교육 종료시 반드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피드백 활용

* 만족도조사 결과 ‘보통 이상’ 답변자가 80% 이하 원스트라의 원아웃제 실시

$$\text{만족도(\%)} = \frac{\text{항목별 만족도(보통이상 답변자수/전체 답변자수} \times 100)}{\text{항목수}}$$

- 신규 위촉강사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과정 이수

○ 강사 수당 : 교육인원,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 조례에 따라 해당기관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실습강의의 경우 보조강사 수당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의 민방위 강사로 위촉되어 소속된 기관에서 민방위 강의를 수행하면 강사 수당 지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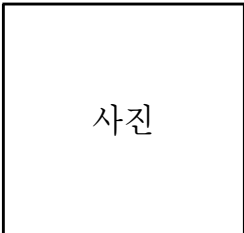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소속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관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기관의 범위는 본청(의회포함), 사업소, 읍면동 등을 말하며, 각각은 독립된 기관으로 본다.

민방위교육강사 연구강의 심사서



성 명	한글	홍 길 동	한자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서울시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 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 역	출신구분 입영(임관)일		계 급		
	전역일자		복무기간		
	심사등급 (A-10,B-9,C-7,D-5)		점수분포	점수	
경력 평가	①경력, 전공분야		20		
강의준비 (강의계획서)	②교육목적(안보의 당위성 등)		10		
	③다양한 시각자료 활용		10		
	④용모 및 자세		10		
교수기술	⑤설득력 있는 강의		10		
	⑥의사전달 및 전문성 (표준어 사용)		10		
	⑦교육내용의 기승전결		10		
	⑧사실적인 예문 등 이해력 증진		10		
	⑨지적호기심과 흥미유발		10		
총 점					

심사관

서명

(1)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인권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 ① 통·리 민방위 대장 ② 통·리 민방위 대원 ③ 직장민방위 대장 ④ 직장민방위 대원
⑤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기본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와 역할 및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전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교육을 위한 실습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교육반의 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음향시설, 음수대, 의자 등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은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교육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10년도에 받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향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본교육강사 관련 만족도》

14.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5.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를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실전훈련강사 관련 만족도》

17.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재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재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9.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재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를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기본교육 또는 실전훈련강사 운영 수만큼 항목 추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민방위 훈련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훈련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

① 통·리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3년차 ② 4년차

5. 민방위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제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훈련을 위한 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민방위 훈련시 참여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대장 및 분대장은 역할에 맞게 지휘·통솔을 잘 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훈련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훈련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10년도 민방위 훈련 참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향후 민방위 훈련참여를 통한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사이버교육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 ① 통·리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6. 사이버교육시 공인인증서 발급, 로그인 절차, 시스템 에러 등 문의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11년도에 받은 사이버 민방위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향후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10. 향후 사이버 민방위 교육시 어떠한 과목을 추가하면 좋겠습니까?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가. 추진방향

- 수동적 체험 위주의 체험실습장을 민방위 임무의 적극적 실습이 가능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로 개편
- 기존의 민방위 전용교육장(기타 시설 포함)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하여 시설 확충
- 시·도별 교육소요 대원수를 고려한 사업배정 추진

나.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및 운영

- 2013년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를 위한 훈련장 구축
 - 리모델링 : 2개 지자체 구축(울산 동구, 경기 파주시 임진각)
- 실전훈련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확대
 - '07~'12년 기 구축 24개 시·군·구 대상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3억원)
 - * 1개 교육반(100명)별 교관 3명 1시간 수당 기준
 -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등 포상시 실전훈련센터 구축 시군구 우선 추천
- 교육훈련 참여 대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추진

<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현황 >

구분	합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지원 대상	24개	2개	4개	4개	4개	6개	4개
		경기 안양시, 광주 광산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서울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금정구, 경기의정부시, 경기 수원시, 경기 부천시, 경기 평택시, 경남 양산시	서울광진구, 인천부평구, 경기화성시, 제주제주시
개소당 사업비	-	570백만원 (국비30%지원 : 171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국비 지원액	3,642	342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900백만원	6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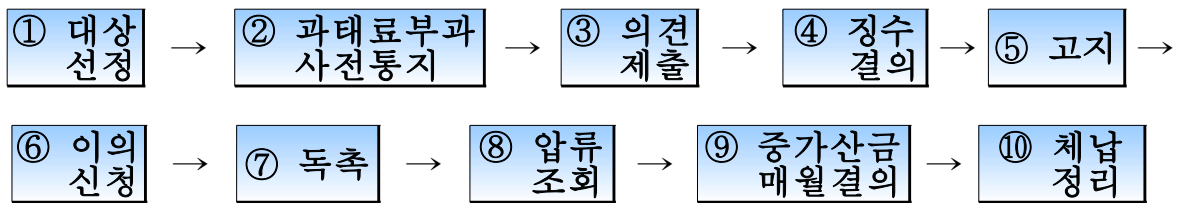
다.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현황

연도	개소	수용 인원	교육장 위치	훈련장 구성
07	2	16,67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64-5	화생방,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9,238	광주 광산구 소촌동 845	화생방(강의장), 응급처치, 소화기
08	4	12,189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67-18	화생방(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소화기
		23,52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파동 445-13	화생방(강의장), 연기체험, 응급처치(강의장),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지진, 강풍
		14,988	경북 구미시 사곡동 434	화생방(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7,458	경남 진주시 이현동 109	화생방, 응급처치, 소화기
09	4	28,858	서울 성북구 석관동 1번지	화생방(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지진, 풍수해
		26,506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21,777	경기 고양시 행신3동 892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비상탈출, 소화기, 지진
		12,393	경남 김해시 구산동 660	화생방, 연기체험, 응급처치, 소화기, 전기가스안전, 풍수해, 교통안전
10	4	6,763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	화재안전, 지진, 완강기, 응급처치, 도시철도 및 교통안전, 화생방 및 생활안전
		10,42	경기 파주시 연풍리 419-2	생활안전, 지진, 응급처치, 경보통신(응급복구), 완강기, 화생방, 연기피난, 화재진화
		3,929	전남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623-4	지진, 화재진압, 화생방, 응급처치, 피난탈출
		8,481	광주 서구 금호동 789	화재진압, 심폐소생술, 화생방, 연기피난
11	6	36,140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로 341	지진, 화재, 응급처치, 화생방, 완강기
		13,244	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여중	지진, 열·연기 탈출체험, 화생방, 화재진압, 응급처치
		11,234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525	화재진압, 화생방, 전기가스안전, 완강기, 산악안전구조, 응급처치
		25,39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0번길 53-6	연기피난, 화생방, 민방위 홍보, 통합모니터링
		6,688	부산 금정구 부곡동 78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화생방, 완강기
		7,606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849	화생방,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연기피난, 지진, 구조·구난, 생활안전
계	20	303,507	-	-

9.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개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동법 시행령
- 부과권자 : 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군구청장
- 시 기 : 12월중(교육결산보고 시 부과현황 포함)
-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나.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부 과 대 상	근 거 규 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가 위반기간 15일 미만 나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 20만원 나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가 위반기간 15일 미만 나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 10만원 나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가 위반기간 15일 미만 나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 5만원 나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2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위반유형	기준액	경 감 기 준	가 중 기 준
교육훈련 불응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령 불복종자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최소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 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 15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질서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경감 처분시 자진납부 20% 경감 규정과 동시 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경감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경감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4만원)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증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조사 (질서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
 -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날짜, 장소 등 기재된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서식 1호) 등기우편 발송
 - 위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 명령
 -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 팩스, 기타 방법으로 조치
 - * 당사자의 사무소 장부·서류·물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질서법 제55조)
- 사전통지 (민방위법 시행령 제57조, 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감경사항 등 기재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서식 2호) 등기우편 발송 확행
 -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해 반송률을 줄이고, 반송시에는 재송달
 - 재송달도 반송될 때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 의견제출 (민방위법 시행령 제57조, 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서식 3호 의견진술서 동봉)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날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조치
 - 자진납부 요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경 고지서 출력·납부
 - 방문시 의견진술서(서식 3호) 직접 작성, 공무원이 기록시 구술의견 진술서(서식 4호) 작성
- 과태료 부과 (질서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서식 5호) 등기우편 발송
 -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납부기한 개시

5일전 납입고지서 발행·송부(국고금관리법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 매월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부,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제척기간)
-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미징수, 미집행시 시효 소멸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28조

-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시 시효가 중단됨,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 기간, 압류해제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소멸시효 중단)
-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소송의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음)에는 진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정지)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 준용(질서법 시행령 제8조)

○ 이의신청 (질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서식 7호) 접수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통지 전에는 이의신청 취하서(서식 8호) 접수 가능
 -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질서법 제24조)

- 체납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서식 6호) 등기우편 발송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발송,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 매월 1일 가산금, 증가산금 징수결의,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납부기한 경과시 1월 이내 체납은 5%, 이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

결의, 증가산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증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
- 증가산금 부과시 납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 도래 전에 수시로 압류조치를 하여 체납처분 실시
- 과태료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태료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준용
 - 소멸 시효 완성 등 아래 사유시 결손처분, 다른 재산 발견시 지체없이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실시

국세징수법 제8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체납처분 중지한 때(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국세기본법 제27조)
 - *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질서법 제52조~제54조)

- 관허사업제한 : 해당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정지, 허가 취소 등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신용정보 제공사실 체납자에게 통보(서식 9호)
- 감치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납부능력 가능한 자는 행정청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라.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는 교육훈련명령을 발한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는 시·군·구청장이 부과·징수

* 결산기준일('12.12.31)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 부과, 전출시에도 주소 조회

부과·징수, 시도는 시·군·구 감사·점검시 과태료 적정부과, 부과 누락 등 철저 관리

○ 이의제기 등 쟁송에 대비 교육불참자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대 확보**(등기발송대장, 배달증명, 공시송달 등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과태료 부과자 및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연차 적용 불가**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 상향조정

○ 과태료 감경, 가산금 부과 등 변경사항 안내 철저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감경 및 가산금부과 등 불이익 사항을 고지서 여백, 뒷면 등 활용하여 반드시 안내(안내문 사전입력)

- 관련서식의 안내문(안)을 참조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

○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 당사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확인서 보관 철저

- | | |
|----------------|----------------|
| •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 | •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
| • 과태료 고지서 | •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

○ 주민등록 말소자는 교육연차 적용 중지(편성 제외)

* 주민등록 재등록시부터 미 이수한 교육기간을 연장이수 조치

□ 서식 1호 (위반행위 조사 출석 통지문)

(앞 면)

00 시장 · 군수 · 구청장 (부서 : 전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우 표 </div>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뒷 면)

위반행위조사 출석 통지문			
대 상 자	성 명		소 속
	주 소		
과 태 료			
부 과 원 인			
출 석 날 짜		출 석 장 소	
<p>민방위기본법 제 조 제 항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조사하고자 하오니,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고지된 날짜에 출석하실 수 없을 때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문의 민방위부서 담당자 0 0 0 ☎ 000-000-0000)			

□ 서식 3호 (의견진술서)

의견진술서

- 소속 :
- 성명 :
- 주소 : (☎)
- 위반일자 : 년 월 일
- 위반행위 :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 의견진술기간 : . . . ~ . . . (10일 이상)
- 위반사항에 대한 진술(의견)

붙임 : 증거자료 1부.

년 월 일

진술인 (인)

□ 서식 5호 (과태료 부과 안내문)

(제1면)

00 시장 · 군수 · 구청장
(부서 : 전화:)

우 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 2 면)

과태료 부과 안내

1.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이용하여 시·군·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이 과태료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증가산금이 합산되어(증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4.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0 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00 ☎ 000-000-0000)

□ 서식 6호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제1면)

00 시장 · 군수 · 구청장
(부서 : 전화:)

우 표

당사자 주소

당사자 귀하

(제 2 면)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

1.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납부기한내 시·군·구 금고 또는 우체국,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독촉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증가산금이 합산되어(증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부과됩니다.
3. 또한, 과태료 미납시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관허사업제한(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감치(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30일 범위내 감치)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문의 00시군구 민방위부서 담당자 000 ☎ 000-000-0000)

□ 서식 7호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과태료	위반사항		부과금액	
부과사항	납부기한		부과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 사 유				

위 고지번호로 이의신청인은 20 . . .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군·구 귀중

□ 서식 8호 (이의신청 취하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고지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 고지번호로 귀청의 과태료 납부 통지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이의를 취하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 · 군 · 구 귀청

□ 서식 9호 (신용정보제공 통보)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주소:)
 제목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 귀하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

■ 신용정보 제공 내용

제공일자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내용
20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팩스 () /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10. 보상 및 치료

(1) 재해 및 휴업보상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2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나. 보상금 지급

- 대상
 - 재해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
 - 휴업보상금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보상금 부담
 -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국가나 해당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시 : 시·군·구**
 -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시·군·구
- * 시·군·구가 보상금 지급시 시·도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별지27호서식) → 사실확인조사서 작성·첨부(별지28호서식) → 시·도제출(시·도 부담시) → 소방방재청 제출(국가 부담시) → 민방위기획위원회 심의(시·도, 시·군·구민방위협의회)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 보상금 지급

○ 지급기준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 장애보상금 받은 후 부상으로 사망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지급

보 상 종 류		보 상 기 준
재해보상	사망보상금	• 노동부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 전년도 기준)의 36배
	장애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장애 1급 : 사망보상금의 12/12 • 신체장애 2급 : 사망보상금의 11/12 • 신체장애 3급 : 사망보상금의 10/12 • 신체장애 4급 : 사망보상금의 9/12 • 신체장애 5급 : 사망보상금의 7/12 • 신체장애 6급 : 사망보상금의 6/12
휴업보상금(치료시)		•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단, 2년이내)

(2) 치료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4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9조

나. 치료비 지급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

○ 치료비 부담

- 소방방재청, 시도, 시군구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국가나 해당 지자체
-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 시·군·구
-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시·군·구

* 국가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 절차 : 읍면동장 경유 시군구청장에게 치료신청서(별지30호서식) 제출 → 의료시설 지정·통지(별지31호서식) → 치료비 지급

○ 의료시설 지정

- 해당 시·군·구 소재 의료시설 지정
- 다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의료시설 지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 의료시설 지정(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부담

(3) 국가유공자 보상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국가유공자 보상 또는 치료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규정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간주
- 보고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별지29호서식)
 - 민방위 대장 →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심사 절차 통지
- 절차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등록신청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소방방재청에서 사실확인서(별지3호 서식 또는 별지4호 서식)작성·증빙서류 첨부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 국가보훈처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체검사·상이등급 판정(상이를 입은 경우, 서면심사로 상이등급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 생략)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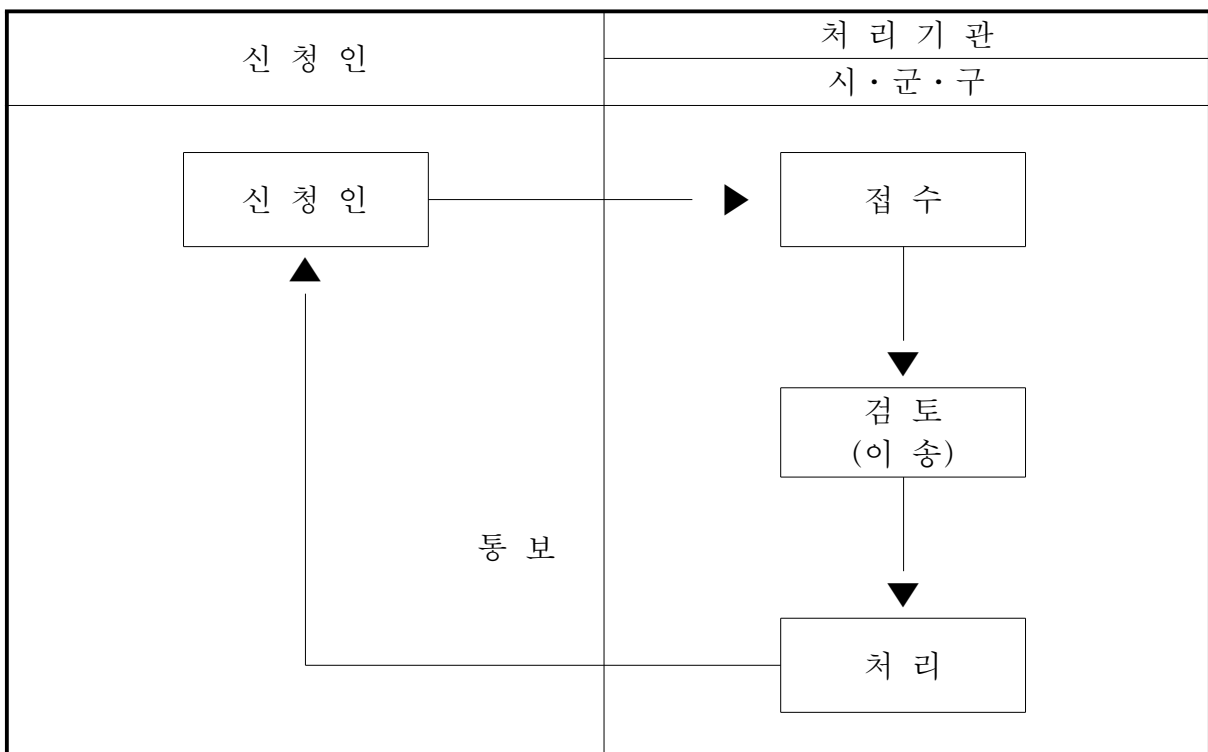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망(부상)자와의 관계			
사 망 자 (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전화 :)		
신 청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재해 보상금(사망·부상) <input type="checkbox"/> 휴업 보상금		
	신 청 액	일 금	원정(명세서 별첨)	
사 고 내 용	발 생 일 시			
	발 생 장 소			
	부 상 정 도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뒤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p>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사 실 확 인 조 사 서			
사망(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전화:)	
사 고 내 용	발 생 일 시		
	발 생 장 소		
	사 고 종 별	<input type="checkbox"/> 사 망 <input type="checkbox"/> 부상(추정 :)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p>「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9호서식]

(시행기관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20 . . .

수신

제목 : 사망(부상) 확인 보고서 (통보서)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망(부상)하였음을 확인 보고합니다.

사망자 (부상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사망 (부상) 경위	⑤사망(부상) 장소		⑥사망(부상) 연월일		⑦사망(부상) 구분	전사·순직 전상·공상
	⑧사망(부상) 경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유족	⑨성명(한문)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사망자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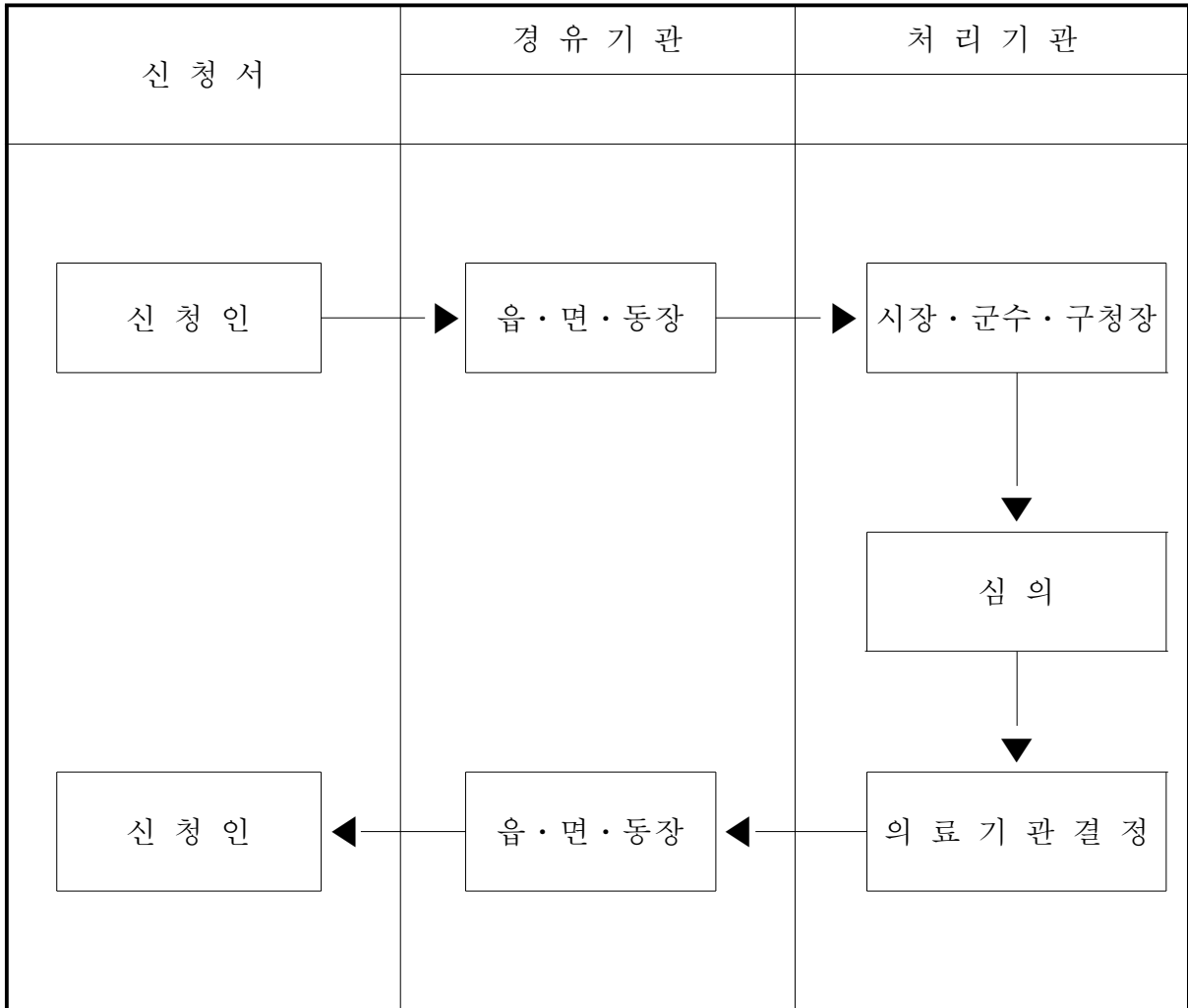
(시행기관장) 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제2호서식] <신설 2009.8.25>

(앞쪽)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 20일(전공사상 당시의 소속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 검사 소요기간은 제외한다)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만 해당한다)		
국 가 유 공 자 상 자 또 는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군별 (소속)	
	입 대 일		계급 (직급)		군번	
	전공사상 포상훈격	<input type="checkbox"/> 전상 <input type="checkbox"/> 공상 <input type="checkbox"/> 전사 <input type="checkbox"/> 순직 <input type="checkbox"/> 상이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포상(훈격:)	전공사상 · 포상일		전역일 (퇴직일)	
신 청 인	국가유공자 등과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유 족 및 가 족 사 항 (신 청 인 포 함)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월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뒤쪽)

재확인 신체 검사	신청 사유							
	최종 신체검사 결과	일자 심사위원 소견	(지)청장 소견			승인 사유	불승인	
접 수	연월일	번호	결 재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p>1. 공통제출서류</p> <p>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p> <p>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통</p> <p>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p> <p>2. 개별제출서류</p> <p>가.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p> <p>나.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p> <p>다.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p> <p>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p> <p>마.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문서(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합니다)</p>					<p>1. 주민등록표 등본</p> <p>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1통)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호의 경우에는 무공훈장증·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사본)</p>			
<p>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경 사망자용)

사 망 자	성 명		계 급		군 번	
	주 소			주민등록번호		
	소 속			입대연월일		
	사 망 연월일			사 망 장 소		
	사망 원인 및 원 상 병 명					

유 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확인자	소 속		계 급		직 위		성 명	①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의 장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제 호

(군경 상이자용)

성명		계급		군번(군인상이자에 한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이당시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현상병명							
상이 경위(6하 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합니다, 기재할 난이 부족하면 별지 첨부)							
전역·퇴역 시 소속				전역·퇴역 근거			
						전역·퇴역 일자	
확인자	소속		계급		직위	성명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기관의 장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